

◆ The Problems of the Library Law in the field of School Library (Korea)

特 輯

## 學校圖書館 關係法規의 問題點

金 斗 弘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所長)

본고에서는 母法인 圖書館法과 그 施行令은 물론 學校圖書館의 設置, 그 行政組織, 및 司書教師에 關係되는 諸般 法規를 提示하고, 이들 法規에 內포된 問題點을 밝히고자 한다.

### 1. 圖書館法에 있어서의 圖書館 分類에 관한 問題點

#### a. 關係法條文

圖書館法 3條 1項에, “圖書館은 . . . 그 設立目的에 따라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으로 區分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 b. 問題點

이 條項은 圖書館 分類의 常識에 逆行하고 있다. 대개의 나라는 圖書館을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學校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의 範으로 分類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協會나 學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大學圖書館과 學校圖書館은 그 施設規模, 組織 및 運營方式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기능에 있어서도 兩者間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前者는 研究活動(Research)을 지원 하는 기능을, 그리고 後者는 教授-學習活動(Teaching-learning)을 지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一部 國家 一 例를 들어 日本 같은 나라 에서는 初·中等學校 圖書館의 育成에 各별한 關心을 가지고 <學校圖書館法>이라는 單獨법을 制定하고 있는 實情이기도 하다.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大學圖書館과 學校圖書館을 圖書館法에서 分離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 2. 學校圖書館 設置에 관한 法規의 問題點

#### a. 關係法規

(1) 圖書館法에 學校圖書館의 設置에 관한 다음과 같은 規定이 있다.

“第25條(設置) ①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圖書室 또는 圖書館을, . . . 두어야 한다.

②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閣令으로 定한다.

(2) 圖書館法施行令 第2條 2項에는, “法 第25條 第2項의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各級學校의 施設基準에 의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3) 學校施設·設備基準令(大統領令 第 3,253號, 1967.10.26. 公布) 中에서 관련조항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a) “第5條(校舍) ①校舍는 學習과 保健·衛生上 적합한 것으로서 이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施設을 두어야 한다. 다만, 教育에 支障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나의 施設을 다른 施設로 兼用할 수 있다.

1.—4. (省略)

5. 圖書室

6.—12. (省略)”

(b) 同基準令 第16條: 新設學校는 設立當時에 적어도 이 基準令에 定한 바 1/3의 施設을 갖추어야 하며, 그 殘餘施設은 文教部令으로 定하는 年度別 施設補充計劃에 따라 補充하여야 한다.

(c) “附則② 이 令 施行 당시의 學校로서 그 施設·設備가 이 令에 의한 施設·設備基準에 未達하는 學校는 文教部令으로 定하는 年度別施設補充計劃에 따라 施設·設備를 補充하여야 한다.

附則③(違反者에 대한 措置) 學校의 設立認可廳은 前項의 年度別施設補充計劃에 따라 해마다 그 施設補充措置를 하지 아니 하는 學校에 대하여서는 學級數의 減縮 또는 學生募集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d) 學校施設·設備基準令 第16條 및 附則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年度別施設補充計劃에 관한 件> (文教部令 第201號, 1968.10.17. 公布) 가운데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別表 1) 學校施設·設備基準令 第16條의 規定에 해당 하는 學校의 年度別施設補充計劃	開校후 1年 이내	開校후 2年 이내
	令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殘餘施設	70%

(別表 2) 學校施設·設備基準令 附則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學校의 年度別施設補充計劃		
地域別	施設·設備	1968年	1969年	1970年
서울特別市	體育場·校舍 垜地	80%	100%	
	校舍·기타 施設·設備	100%		
釜山市·仁川市 大田市·大邱市	體育場·校舍 垜地		80%	100%
	校舍·기타 施設·設備		100%	
全州市·光州市	施設·設備		80%	100%
其他地域	施設·設備		80%	100%

b. 問題點

(1) 圖書館法에 의하면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閣令으로 定하기로 되어 있으며, 同法施行令에는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을 다시 各級學校의 施設基準令에서 定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學校施設·設備基準令을 보면 그 第5條에 校舍 안에 갖추어야 할 最少限의 施設設備로서 12種을 들고 있으며, 그 가운데 圖書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단지 그것 뿐이다. 施設基準이라면, 學校의 크기에 따른 圖書室의 크기가 規定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同基準의 어느 곳에도 그러한 規定은 없다. 이것은 가령 20學級이 넘는 學校에서 6學級 밖에 되지 않는 學校에 적합한 크기의 圖書室을 가지고 있어도 許容된다는 것을 뜻하거나, 6學級の 學校에 적합한 圖書室은 20學級이 넘는 學校에서 는 거의 效用性이 없다.

(2) 圖書館法 25條에서는 學校圖書館의 設置를 義務化하였고, 文教令인 <學校年度別施設補充計劃>에서는 學校圖書館 設置의 時限을 定하여 두고 있다. 同文教部令에 따르면, 新設學校는 開校後 2年內에, 既存學校는 서울의 경우 68년까지, 釜山을 비롯한 6大都市의 경우 69년까지, 그리고 기타 地域은 70년까지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 定해진 모든 施設·設備를 完成시킴을 되어 있다. 따라서, 1970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初·中等學校는 圖書館(室)을 갖추었어야 할 터인데, 今日에 이르기까지 전도요원한 상태에 놓여 있다.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에 대하여 圖書館法은 그 施行令에, 그리고 同施行令은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 定하도록 차례로 미루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도 하더라도 적어도 圖書館法施行令 水準에서 施設基準의 概念을 具體的으로 規定하여야만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서 實效있는 基準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3. 學校圖書館 行政組織에 관한 法規의 問題點

a. 關係法規

(1) <서울特別市·釜山市·道の 教育委員會職制>(大統領令 第2,963號, 1967. 3. 27) 5條 ⑤-4에 의하면,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에서는 文化體育課에서 圖書館行政을 맡고 있으며, 同職制 5條 ③-7에 의하면, 初等教育課에서 學級文庫의 指導를 맡도록 規定되어 있다.

(2) 上記 職制 9條 ③-35에 의하면, 釜山市 및 各道 教育委員會에서는 文政課에서 圖書館行政을 맡고 있으며, 8條 ③-7에 의하면, 初等教育課에서 學級文庫의 指導를 맡고 있다.

b. 問題點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의 圖書館行政 主管부서는 學務局의 文化體育課이다. 職制上으로, 初等教育課에서는 學校文庫의 지도 만이라도 맡고 있으나, 中等教育課의 소관업무 가운데는 그것마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國民學校 學級文庫의 지도를 제외한 圖書館行政 전반(學校圖書館行政 포함)을 文化體育課에서 主管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釜山市와 各道教育委員會에서는, 管理局의 文政課에서 圖書館行政을 主管하고 있으며, 初等教育課에서 國民學校 學級文庫의 지도를 맡고 있다.

여기서, 첫째 問題가 되는 것은, 行政書記官과 行政事務官이 指揮하는 文化體育課와 文政課에서 初中等學校 圖書館行政을 맡을 能力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公共圖書館 問題나 그밖의 圖書館 一般에 관한 問題에 대하여서는 現行職制대로 하고, 初中等學校의 圖書館 問題는 初等教育課와 中等教育課에 이관하도록 市·道教育委員會職制를 補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問題가 되는 것은, 市·道教育委會職制의 初等教育課 소관업무 가운데 “學級文庫”라는 用語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用語가 文字대로의 意味로 사용되었다면 몰라도, 國民學校에 무슨 圖書館(室)이 必要하겠는가, 學級文庫만 있으면 될 것 아니냐는 意味로 사용되었다면—실상 그러한 협의가 농후하다—그것은 國法(圖書館法)을 거역하는 위험천만한 思考方式이라고 할 수 있다.

4. 司書教師에 관한 法規의 問題點

a. 關係法規

(1) 圖書館法 第6條에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각각 司書教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教師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同法 施行令 第6條 1項에는 “法 第6條 第1項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各級學校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司書教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教師를 둔다.

1. 國民學校에는 1人 이상의 司書教師나 1人 이상의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教師를 둔다.

2. 中學校와 高等學校에는 그 學生數가 1,200人 이하인 때에는 1人的 司書敎師나 1人的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敎師를 두며, 그 學生數가 1,200人을 초과할 때에는 2人的 司書敎師나 2人的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敎師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教育公務員法 第3條 別表 1에는 司書敎師의 資格基準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資格	學校別	中等學校	國民學校	特殊學校	幼稚園
司書敎師		1.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 圖書館學을 專攻하고 所定の 敎職課程을 履修한 者. 2. 中等學校의 準敎師 이상의 資格證 所持者로서 所定の 司書敎師養成講習을 받은 者.			

**b. 問題點**

(1) 圖書館法이나 그 施行令에 “司書敎師나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敎師”라는 表現이 使用되고 있는데, 이것은 司書敎師를 配置하지 못할 때 一般敎師로써 代置할 수 있도록 教育行政上의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 둔 셈이 된다. 官吏들이 이러한 좋은(?) 口實 감을 놓칠 理가 만무하다. 1968년에 오직 한번 文教部에서 33명의 司書敎師를 配定하였을 뿐, 그 후로는 한 사람의 司書敎師도 配定하지 않은 事實을 생각하면 그들의 生理를 알 수 있다.

따라서,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敎師”라는 字句가 해당 法規에서 삭제되지 않는 한 오늘날과 같은 司書敎師 不在의 상황이 거의 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2) 教育公務員法上的 司書敎師의 資格規定은 두 가지 點에서 問題가 된다.

첫째, 司書敎師는 特殊敎師의 系列에 속하여 進級の 기회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 司書敎師에게 一般敎師의 資格과 司書의 資格을 아울러 要求하고 있으면서——즉 一般敎師보다 高等의 資格基準을 要求하

고 있으면서——일단 司書敎師로서 任命되면 一般敎師보다 格下된 特殊敎師의 系列에 속하게 되어 校長, 校長으로 승진할 機會가 막혀버리는 것이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둘째, 國民學校와 中等學校의 司書敎師 사이에 資格 區分이 없다는 점이다. 즉, 中等學校 準敎師 이상의 資格證 所持者만이 所定の 講習을 이수한 뒤 司書敎師의 資格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國民學校에서 司書敎師를 확보하지 못할 것은 뻔하다.

이 두가지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現行 司書敎師 資格規定을 개정하여 國民學校와 中等學校를 區分하여 一般敎師의 基準에 따라 그 資格을 規定하여야 할 것이다.

×            ×            ×

以上으로써 學校圖書館에 관련된 諸法規의 問題點을 대충 指摘하였거니와, 이들 問題點 中에는 개정되어야만 實效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대로 두어도 運營만 잘하면 實效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있다. 要는, 이 관계 法規를 運營하는 文教當局이 얼마나 誠實하게 遵법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誠意있게 學校圖書館을 育成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成敗가 決定된다고 할 것이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問責하지 않는 낡은 秩序를 물리치는 일이 또한 維新課業이라면 文教當局은 維新隊列에 앞장 설 자격을 얻기 위하여서라도 이제까지 輕視하였거나 忘却하였던 圖書館關係 諸法規를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 보아야 할 處地에 있다고 할 것이다.

**회비와 출판물 대금을 조속히 납부해 주십시오**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급 도서관에서 보내 주시는 회비와 출판물 대금이 협회의 운영은 물론 우리나라 도서관 사업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기본자금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수납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난 제18차 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이 승인하여 주신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도서관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을 줄은 아오나 우리나라의 도서관 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시는 뜻에서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